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가단103267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득

변론 종결 2020. 9. 22.

판결 선고 2020.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계약 일반사항 등)

1 계약명 : C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장치(97.92kw급) 설치건

2 설치장소 : 경남 밀양시 D외 2필지

3 계약금액 :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기간 : 2017. 12. 13. ~ 2018. 12. 30.

5 대금지급조건 : 현금(단, PF 경우 금융사의 조건에 따른다.)

계약금 - 20%(3,520만 원) 계약 후 1,0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나머지 지급

중도금 - 70%(1억 2,320만 원) 구조물, 모듈, 인버터 입고 2일전까지

잔금 - 10%(1,760만 원) 사용 전 검사 후 즉시 지급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원고)의 계약해지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피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이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개발행위 인·허가 승인 후 계약해지시 공사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 을(피고)의 계약해지

1. 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갑(원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금액 재조정

등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15. 300만 원, 같은 해 12. 18.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2017. 11. 28. 원고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8. 5. 9.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내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2018. 7.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사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76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어떤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초기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더 나아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계약금 3,020만 원(= 3,520만 원- 5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